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 6. 8 규칙 제 787호
일부개정 2023. 6. 9 규칙 제110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9 규칙 제1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6. 9>

용인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1. 홍보활동비

구분	시간	지급액		비고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일반 시민	
왕복 이동시간 과 체류시간	4시간 미만	1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20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8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2. 홍보물 출연료

구분	횟수	지급액	비고
홍보 영상물	1회	300만원 이하	

※ 홍보활동비와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